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체육 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며, 수탁기관 관리·감독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주민 시설사용 기회균등 명문화 및 허가기준 구체화, 군수의 사전승인 및 지도·감독 의무를 명시(안 제4조제4항)
- 나.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근거 명확화 및 위반자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처분 결과 공개 규정 신설(안 제16조)
- 다.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근거 및 해지된 자에 대한 1년간 참여제한 규정 신설(안 제24조의2)
- 라. [별표5]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- (2) 입법예고(2026. 5. 22. ~ 6. 11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·운영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그 규정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또는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위탁계약의 해지)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	전액면제	
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·단체	전액면제	
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	80%	
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80% 이내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
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	30%	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	50%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	50%	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	3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	50%	
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	50%	
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	30%	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용허가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사용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·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그 규정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
제1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<u>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.</u> <u>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2.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제한 또는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

<신 설>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(생 략)	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	50%	
(생 략)		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4조의2(위탁계약의 해지)

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(현행과 같음)		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	50%	
(현행과 같음)		

관 계 법 령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 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
제23조(공공시설의 이용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2조(공공시설의 이용)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「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」 (2019.10.21.의결)

1.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

- ①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규정을 관련 규정에 명시

2.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

- ①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(예:1년간) 위탁참여 제한
- ② 과도한 음주·흡연·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(예:30일간)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규모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작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체육진흥과
체육시설2팀장

성 명 (연 락 처)

이 석 철 (☎ 8481)